

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 제정 및 「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 재구성으로 위원의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

2. 주요내용

가. 기존 「구미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폐지 및 「구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」 제정으로 환경정책위원회 일부 용어 변경 (안 제20조, 제22조)

나. 「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신설로 환경정책위원회 기능 중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분 삭제 (안 제20조, 제21조, 제22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“환경보전·화학물질 안전관리·녹색제품 구매촉진·저탄소”를 “환경보전·녹색제품 구매촉진·탄소중립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제3호 중 “환경보전·화학물질 안전·녹색제품 구매촉진, 저탄소”를 “환경보전·녹색제품 구매촉진, 탄소중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환경업무”를 “환경정책업무”로 한다.

제22조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2조제5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2조제7호를 제6호로 한다.

4.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
5.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환경정책위원회 설치)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, 지속가능한 개발과 <u>환경보전 · 화학물질 안전관리 · 녹색제품 구매촉진 · 저탄소 녹색성장</u> 관련업무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	제20조(환경정책위원회 설치) -- ----- ----- <u>환경보전 · 녹색제품 구매촉진 · 탄소중립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
제21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· 2. (생 략) 3. <u>환경보전 · 화학물질 안전 · 녹색제품 구매촉진, 저탄소 녹색성장</u> 관련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4. (생 략)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환경업무</u> 담당과장이 된다.	제21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환경보전 · 녹색제품 구매촉진, 탄소중립</u> ----- 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환경정책업무</u> -----.

④ (생 략) 제2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1. 2. (생 략) 3. <u>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u> 4. <u>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</u> <u><신 설></u> 5. (생 략) 6. <u>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</u> 7.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 제22조(기능)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4. <u>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</u> 5. <u>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</u> 3. (현행 제5호와 같음) <u><삭 제></u> 6. (현행 제7호와 같음)
---	---

관계법령

□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제58조(환경정책위원회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5. 12. 22., 2016. 1. 27., 2021. 1. 5., 2021. 6. 15.>

1.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- 1의2.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
2. 환경기준·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
3.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4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·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5.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6. 「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7.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·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·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
8.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 및 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, 재질·구조의 개선,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

8의2.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

8의3. 「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환경정책·자연환경·기후대기·물·상하수도·자연순환·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

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,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21. 1. 5.>

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,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·자연환경·기후대기·물·상하수도·자연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제2항에 따른 시·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·군·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소 관 부 서		환경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김 동 진
	담 당	김 창 주
	담 당 자	신 정 은 (480-5242)